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합니다.

3.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상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
   일반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이미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6. **보험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담보별미경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미납보험료 차감 후 지급)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보장기간 종료시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8.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험분쟁조정**
   가입하신 보험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농협 또는 당사(☎1644-8900/인터넷 www.nhfire.co.kr▶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11.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준법심의필 201702-000호 | 제작 농업보험지원부(2017.2)

안내사항

전화번호 NH농협손해보험_Tel 1644-8900 | Fax 02)3786-7660
홈페이지 http://www.nhfire.co.kr 〉 보험상품 〉 농작물재해보험

※ 본 안내장은 상품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마음을 더합니다 헤아림

정부 50%
지방자치단체 20~30%

사과 | 배 | 단감 | 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2017. 2. 20 ~ 4. 14

보상재해 태풍(강풍), 우박, 지진, 동상해, 집중호우
*동상해, 집중호우는 특약임



농림축산식품부 NH농협손해보험

1 가입내용



구분	내용
가입품목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가입지역	전국
가입단위	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
자기부담 비율	15%, 20%, 30%형 중 선택 단, 15%형은 최근 3년 연속('14년~'16년) 보험 가입하고, 최근 3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과수원만 가입가능
납입방법	일시납 ※신용카드 납부가능(농협, 하나(구 외환), KB, BC카드 가능)
가입기간	2017. 2. 20 ~ 4. 14

'16년 대비 '17년 개정사항

- **지진위험도 보장**('보통약관' 및 '나무보장특약'에 포함됨)
  (진도 5.0이상의 지진 발생 시 태풍(강풍) 보장에 준하여 보상)

- **'단감', '떫은감' 가을동상해로 인하여 잎이 50%이상 고사되는 경우, 미착색과를 사고발생일에 따라 착과피해 감수과실수 인정**

  ※착과피해 감수과실수
  = 0.31% × (사고일부터 보장종료일까지의 잔여일 수) × (정상 과실 수)

  (단, 10월 31일 이전 사고에 한함)

2 보장내용



구분		보상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험금
과실 손해 보장	보통 약관	태풍(강풍), 지진, 우박	발아기 (단, 발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종료시점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가입금액[주1] × (피해율[주2] − 자기부담비율)
	특별 약관	봄동상해		5월 31일	
		집중호우		수확기종료시점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가을동상해	9월 1일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감의 경우 11월 5일, 10일, 15일 중 선택)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발아기 (단, 발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종료시점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험가입금액[주1] × (피해율[주3] − 자기부담비율)

※ 주1) 보험금 지급시기의 보험가입금액은 최종 보험가입금액을 말함
주2) 피해율 = 누적감수량 / 기준수확량
주3) 피해율 = 피해주수(보험사고로 고사된 나무주수) / 실제결과주수

3 재해별 누적감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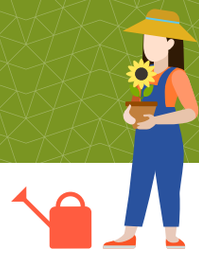


보상재해	적과종료이전	적과종료이후
태풍(강풍), 지진 집중호우	● 침수 및 나무의 유실, 매몰, 도복, 절단으로 인한 감수량	● 침수 및 나무의 유실, 매몰, 도복, 절단으로 인한 감수량 ● 낙과손해감수량 ● 사과, 배의 경우, 착과손해 감수량(낙과감수량의 7%)
	● 단감, 떫은감의 경우, 6월~10월 사이에 피해 시 낙엽률에 따른 착과손해감수량	
우박	● 우박피해로 인한 유과타박률에 따른 감수량	● 낙과손해감수량 ● 수확전 착과손해감수량
봄동상해	● 봄동상해로 인한 감수량 *보장종료일:발아기~5. 31	
가을동상해		● 가을동상해로 인한 감수량 *보장기간은 9. 1 ~ 11. 10 (단감, 떫은감은 11. 5 / 11. 10 / 11. 15 중 선택)

● 피해율 = **적과종료이전 재해별 감수량** ⊕ **적과종료이후 재해별 감수량**

▶피해율은 적과종료이전과 적과종료이후의 보상하는 재해별 감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4 보험료와 보험금(예시)



●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요율 7% 가정

보험료 : 1,000만원 × 7% = 70만원 농가부담 14만원 수준

※ 보험요율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계약자는 보험료의 약 20%(전국평균)를 부담합니다.

●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가정

보험금 : 1,000만원×(50% – 20%) = 300만원

정상수확	자기부담금	보험금 수령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비율 이하의 피해율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나무손해보장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실제 결과주수 500주, 피해주수 50주로 피해율이 10%일 경우 가정 (자기부담비율 3%)

보험금 : 5,000만원 × (10% – 3%) = 350만원

● 피해발생 시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농협으로 사고발생 원인 및 피해 정도를 통지해야 함

5 주요 특약(예시)



●가입금액증액특약 (예시)

가정

평년착과량 1,000kg,
기준수확량 1,200kg,
누적감수량 600kg,
자기부담비율 20%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특약을 가입한 경우
	적과후 착과수 조사결과 늘어난 착과량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기존 일부 보험 처리와 동일)	적과후 착과수 조사결과 늘어난 착과량에 대하여 보험인정을 받음으로써 피해 발생 시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됨
1 최초 가입 평년착과량 1,000kg	가입수확량 1,000kg 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수확량 1,200kg 가입금액 **1,200만원**
2 적과후 착과수 조사결과 기준수확량 1,200kg	가입수확량 1,000kg 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수확량 1,200kg 가입금액 **1,200만원**
3 수확기 보험금 비교 피해율 50% (누적감수량 600kg / 기준수확량 1,200kg = 50%)	보험금 **300만원** 1,000만원 × (50%–20%) = 300만원	보험금 **360만원** 1,200만원 × (50%–20%) = 360만원

●'단감', '떫은감' 가을동상해특약 (예시)

가정 사고일 : 10. 20 / 잎고사율 : 50% 이상 / 보장종료일 : 11. 15

변경 전

	100%형	80%형	50%형	정상과실
피해과실비율	20%	10%	10%	60%

착과피해율 = 1 × 20%
+ 0.8 × 10%
+ 0.5 × 10%
+ 0 × 60%
= 33%

변경 후

	100%형	80%형	50%형	정상과실
피해과실비율	20%	10%	10%	60%

착과피해율 = 1 × 20%
+ 0.8 × 10%
+ 0.5 × 10%
+ (0.0031 × 27) × 60%
= 38%

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절차

가입상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과수원원장 작성해 주시구요.
과수원 재배현황은
현장방문하여 확인할게요.

※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정부지원 불가

계약인수 현지조사



나무주수, 면적을 확인했으니
농협에 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상품 주요내용 설명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상하는 재해는...



이제 가입되었구요.
여기 증권, 상품설명서,
약관이에요.
혹시 피해나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